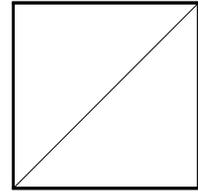


공개



의안번호	제 44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2. 22. (제 22 차)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의
비공개기간 연장 심사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2. 22.

1. 의결주문

2019년 금융위원회에 상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및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중 비공개기간이 도래한 5개 심사안에 대해 비공개기간 연장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9년 금융위원회 안건 중 1년 비공개로 설정하였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및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5건에 대하여 비공개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비공개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2019년 제22차 금융위원회에 상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중 다음의 5건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비공개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동일한 사유로 비공개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함

- (주)트루테크놀로지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제480호 안건)
- (주)한패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제483호 안건)
- (주)카사코리아 및 (주)국민은행 등 5개 신탁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제487호 안건)
- (주)직뱅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제489호 안건)
- (주)루트에너지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제490호 안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참조

(별지)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의 비공개기간 연장 심사안

2019년 금융위원회에 1년 비공개로 상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및 지정 내용 변경 심사안 5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공개 기간을 연장한다.

— 다 음 —

1. 비공개기간 연장 대상 심사안

- (주)트루테크놀로지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제480호 안건)
- (주)한패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제483호 안건)
- (주)카사코리아 및 (주)국민은행 등 5개 신탁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제487호 안건)
- (주)직뱅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제489호 안건)
- (주)루트에너지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제490호 안건)

2. 비공개기간의 연장

- (주)트루테크놀로지스, (주)한패스, (주)카사코리아 및 (주)국민은행 등 5개 신탁 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과, (주)직뱅크, (주)루트에너지의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의 비공개 기간을 1년 연장한다.
 - 당초 비공개기간 : 2019. 12. 18. ~ 2020. 12. 17.
 - 연장된 비공개기간 : 2020. 12. 18. ~ 2021. 12. 17.

3. 결정일 : 2020. 12. 22.

(붙임1)

관계법규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의2(안건의 공개) ① 위원회의 안건은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부적절한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②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③비공개 안건은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고, 일정 기간 비공개 안건은 그 기간이 경과한 연도의 말에 일괄 공개한다.

④위원회 안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안에 소관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전자금융과 금융혁신과 금융규제샌드박스팀	자본시장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 IT·핀테크전략국 핀테크혁신실	외환제도과
연 락 처	02-2100-2650 02-2100-2660 02-2100-2970 02-2100-2530 02-2100-2842	02-3145-7580 02-3145-6700 02-3145-7420 02-3145-7120	044-215-4750